

1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 금지교육

삼봉유치원
2024.5.2.(목)

가. 청탁금지법 주요내용



- 근거: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
- 정의: 청탁금지법은 공직자 등에 대한 부정청탁 및 금품 등의 수수를 금지함으로써 누구에게나 깨끗하고 공평한 세상을 만들기 위해 정하였습니다.
- 적용대상: 학부모님과 관련된 적용대상은 공직자(유·초·중·고등학교 교직원, 사립 학교 교직원 및 학교법인 임직원), 공직자 등의 배우자, 각종 위원회에 참여하는 민간 위원(학교운영위원회 위원,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위원 등), 부정청탁 및 금품을 제공한 일반국민입니다.
- 직접적인 이해 관계가 있는 경우 어떠한 금품도 허용되지 않음
 - 학생, 학부모가 교사에게 제공하는 음식물, 선물, 경조사비 등은 소액이라도 수수 금지 금품 등에 해당됨
 - 담임교사 등은 학생에 대한 성적 및 수행평가를 담당하는 위치에 있으므로 학생, 학부모와 교사는 “직접적인 이해관계자”임

나. 불법찬조금이란?

- 근거: 학교발전기금의 조성 운용 및 회계관리요령
- 정의: 학부모 단체(학부모회, 운동부 후원회, 학부모 임의단체) 등이 학교발전기금의

목적, 조성, 절차와 방법 등을 위반하여 교육활동지원 명목으로 학부모로부터 임의, 할당 모금해서 학교발전기금회계에 편입하지 아니하고 임의로 사용하는 일체의 금품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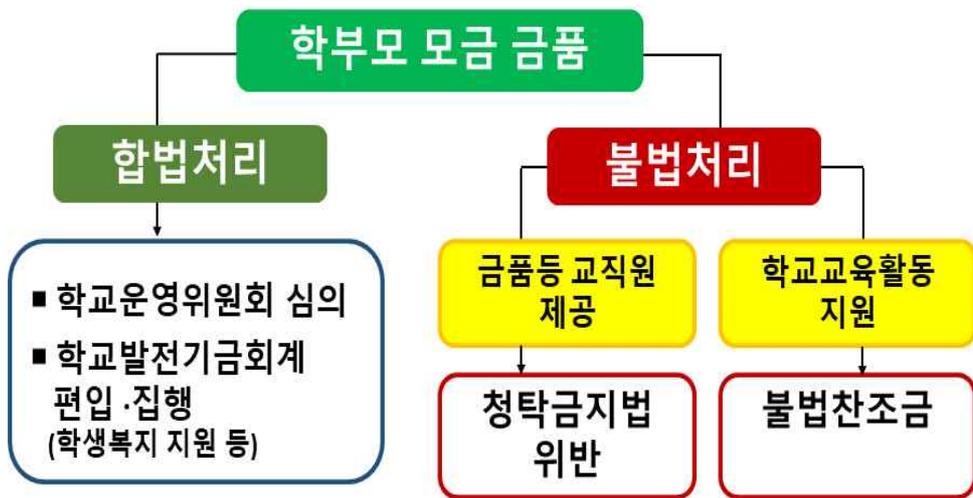
정 교육활동 지원은 “학교발전기금”으로

- (학교발전기금) 학생 교육활동과 관련된 학교별 특색있는 교육사업 등 교육공동체가 공감할 수 있는 순수한 교육목적을 위하여 투명하고 건전하게 조성·운영

| 기부금품 | 모금금품 | 자발적 조성금품 |
|---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부자 자유의사 • 개인, 조직, 단체 등이 기부 • 금전 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시설, 수목, 재산 등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 • 일반인(개인, 단체 등), 학부모 참여 가능 • 금전 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시설, 수목, 재산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운영위원회 심의·의결 • 학부모의 자발적 참여 • 금전 및 유가증권, 도서, 물품, 수목 등 |

- (학교발전기금회계 출납명령기관) 학교운영위원회 위원장
- (학교발전기금 접수처) 각급 학교 교육행정실
- (법정기부금) 학교발전기금은 소득세법 제34조, 법인세법 제24조,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 4에 따른 기부금으로 기부내역은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에 등재

학부모 모금 금품의 처리에 따른 적법성 구분



자료출처: 국민권익위원회(www.acrc.go.kr)